

대전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가단1210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최정기

변론 종결2021. 1. 20.

판결 선고2021. 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광주시 B 전 555m²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의 2018. 9.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8. 9. 14. 접수

제745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C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① 2006. 5. 9. 보증번호 E, 보증원금 1,445,000,000원, 보증기한 2007. 1. 25. (차후 2012. 1. 20.로 변경)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85%)를 발급해 주어, D가 2005. 1. 2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7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고(이하 '제1보증건'이라 한다), ② 2010. 1. 21. 보증번호 F, 보증원금 850,000,000원, 보증기한 2011. 1. 21.(차후 2012. 1. 20.로 변경)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85%)를 발급해 주어, D가 2010. 1. 22. G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의 기업일반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다.(이하 '제2보증건'이라 한다).

2) 원고와 D 사이의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D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 모든 부채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3) D가 2011. 5. 9. 원금연체 및 회생신청으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당하는 대출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① 제1보증건 관련하여 2011. 6. 30. 중소기업은행에게 1,447,300,123원, ② 제2보증건 관련하여 2011. 6. 3. G은행에게 857,091,095원 합계 2,304,391,21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제1보증건 대위변제금 중 825,704,403원을, 제2보증건 대위변제금 중 115,127,482원을 각 회수하였으므로, 잔존 대위변제금은 1,363,559,333원[제1보증건

621,595,720원(=1,447,300,123원-825,704,403원)+제2보증건

741,963,613원(=857,091,095원-115,127,482원)]이다.

나. C의 부동산 취득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C은 광주시 B 전 55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8. 9. 14. 접수 제74502호로 2018.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은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74503호로 2018. 9.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4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다. C의 재산 상태

C은 이 사건 토지 및 파주시 H 임야 2800m² 중 79/28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하여 1,363,559,333원의 구상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하여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게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고,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룬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동산 매수행위와 담보제공행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단기간 내에 순차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평가할 것도 아니므로,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도 아니 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718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C이 피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위 토지를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가 아버지인 C의 대리인으로서 매수인을 C로 하여 2018. 3. 12.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조로 I의 계좌로 2018. 3. 8. 5,000,000원, 같은 달 30. 2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I 작성의 2018. 3. 6.자 계약금 5,000,000원에 관한 영수증에는 "C(A-피고임)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8. 8. 24. 잔금 지급일에 I는 매매대금 40,000,000원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매수인 측에게 교부하였다.

③ 매매대금이 완납되고 C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인 2018. 8. 24. C은 피고에게 "일금 4,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A(피고)로부터 빌렸음을 확인함. 위 토지 처분시 A에게 변제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④ 피고는 C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C은 만 83세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C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충당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도 없다. 또한 부자지간에 이자의 약정 없는 금전거래를 하였고 변제기를 확정기한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C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강길연